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93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세액 자진납부 시 고지서 송달 간주 및 송달의무 면제(구자근의 원안)	3

I. 개요

1.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93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6. 19.

(3) 회 부 일 : 2025. 6.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도 전자송달 등 고지서 송달이 요구됨.

그러나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그 사용이 대중화되어 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진납부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어 납세자의 오해에 따른 민원 발생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자진납부한 시점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고지서 송달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세액 자진납부 시 납부고지서 송달 간주 및 송달의무 면제(구 자근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서류의 송달(제8조) ☐ 서류송달의 원칙(제1항) - 명의인의 주소,居所(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송달 <u><신 설></u>	☐ 서류의 송달(제8조) ☐ (현행과 같음)
☐ 서류 송달의 방법(제10조) ☐ 전자송달의 방법(제8항) -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u>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 세액을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u>	☐ <u>납부고지서 송달의 예외 신설(제8조의2)</u> ○ <u>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u> ☐ 서류 송달의 방법(제10조) ☐ 전자송달의 방법(제8항) -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u><단서 삭제></u>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자진납부한 경우부터 적용

* 구자근의원안 2025. 6. 19. 발의(의안번호 10932)

□ 전자송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의 송달을 말함.¹⁾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송달방법으로,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²⁾

다만, 「국세기본법」 제8조제8항 단서에 의해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여기서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소득세법」 따른 소득세액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함.³⁾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居所(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⑪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④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

□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를 비롯한 각종 정기분 세금에 대해, 고지서 송달 이전에 납세자들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지 내용을 사전에 조회하고 인지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이러한 추세로 인해,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세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국세청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 자진 납부 건수는 2020년 약 67만 건에서 2024년에는 142만 건을 초과하여 약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5년간 세액 자진납부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진납세건수	672,654	806,094	1,200,644	1,329,515	1,422,137
자진납세액	16,380	19,544	30,761	33,727	33,805

자료: 국세청

그러나, 적법하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납부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송달 절차가 요구되어 행정적 낭비⁴⁾와 민원이 발생⁵⁾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 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발송으로 납세자 혼란이 초래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최근 5년간 납부고지서 송달 비용]

(단위: 억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등기우편	192	198	293	301	303
일반우편	3	4	3	2	2
합계	195	202	296	303	305

자료: 국세청

□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자진납부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자진납부한 시점에 고지서가 이미 송달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송달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납부가 완료된 세액에 대해 다시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송달비용을 줄이고,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최근에는 납세자가 홈택스 및 손택스 등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지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바, 이러한 납부 행위를 실질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와 동

4) 국세청에 따르면 송달완료되기 전에 완납된 납부고지서를 송달이 적법하게 완료될 때까지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한 송달 방법으로 재발송 시 지출되는 예산 및 인력의 낭비를 말함.

5)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무납부 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등기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세자가 송달받지 못하였으나,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자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전자납부함. 이 상황에서, 담당직원은 해당 양도소득세 납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하였는데, 해당 납세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고지서를 재차 보낸 것이 악의적이라며 민원을 제기함.

일하게 간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다시 말해,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고지 행위는 이미 세액 징수라는 고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형식적인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자진납부한 시점에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납세자의 조세불복 제기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어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제12조⁶⁾는 납부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 효력은 송달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1조⁷⁾에 따르면 조세불복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고지서가 실제로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자진납부한 시점을

6)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7)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는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송달일로 간주할 경우, 고지서 교부 또는 송달 없이 불복제기 기간이 곧바로 기산되어 납세자의 권리 행사 기간이 부당하게 단축될 수 있음.

실제로 대법원도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고지서의 송달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고지서 송달을 간주하는 제도 도입 시에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⁸⁾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령에 따르더라도 전자송달 신청 간주를 통해 납세자의 알권리와 불복권을 보장하면서도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7

8)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